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제 목 **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**

1. 전자관보 제19731호 (2020.04.14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”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(시행일 : 2020.05.14.)

붙임 : 가. 전자관보 사본 1부.

나. 부과기준 공포 내용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이사장 직무대행 이 기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0-124호 (2020.04.17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